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12. 23.(화) 15: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4-60-26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근거하여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절차’를 균발위에서 의결해 방송기반국장 전결로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근거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조정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고시 제9조(자료제출 요구)를 미등록 규제로 간주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면 11월 12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 드렸고, 11월 17일~12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 간 성실한 합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을 금지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통위로부터 조정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 불성립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조항, 고시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도입에 관한 건 (2014-60-26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도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도입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도입방안을 아래 본문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주요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EBS의 MMS(Multi-Mode Service)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경우에 향상된 디지털 방송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시청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한편 ‘14년 상반기 실험방송 결과 방송기술 발전으로 TV 오작동이나 화질 저하 우려는 과거에 비해 훨씬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청자가 TV 교체 등 추가적인 부담 없이 MMS를 시청할 수 있도록 MPEG-2 방식으로 우선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향후 TV 수신기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MPEG-4 등 보다 향상된 압축기술 방식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높은 사교육비 부담 및 교육격차 문제 등을 고려하면 초·중학, 영어 등 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해 EBS에 MMS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방송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등 공적 재원의 비중이 높으며,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비해서 제작비 규모가 적은 EBS에 MMS를 우선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에 시청자 복지 증진, 사교육비 절감 및 방송시장 영향 최소화 등의 차원에서 EBS에 MMS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추후 EBS의 시범방송 서비스에 대한 시청행태 및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제도 정비 등 MMS 본방송 도입 방안을 마련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EBS 시범서비스 계획(안)입니다.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말부터 방송을 실시하고, MPEG-2 방식을 활용해 HD 채널 1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편성은 초·중학 교육, 외국어, 다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편성하고,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2조 규정에 따라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송광고는 공익광고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방송 허용방식은 방송국 변경허가, 즉 전파법령에 따른 변경허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1월 중에 변경허가를 거친 후에 EBS 시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본방송 도입 로드맵을 마련코자 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를 놔두고 EBS 먼저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시청하는 가구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MPEG-2 방식과 MPEG-4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TV 수상기가 아직은 차이가 있고, EBS는 MPEG-2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KBS는 MPEG-4 방식으로 하겠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생각은 EBS 교육방송에 한해서 광고 없이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채널방송은 아주 최신 방송기술은 아닙니다만 방송기술 발전에 따라 도입하는 것입니다. 방송기술과 관련해서 방송의 송출, 송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EBS는 송신 부분을 전적으로 KBS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MMS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난시청 문제나 그와 연관된 수신 환경 개선 문제, 또한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것의 개선주체는 어디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현재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방송 송출에 대한 시스템을 KBS와 EBS가 결국 협력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측면이야 물론 EBS가 저야겠지만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것은 KBS가 해 주어야만 차질 없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KBS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EBS만으로 다채널 방송을 도입했을 때에는 이것이 시범서비스입니다만 방송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추가로 보완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만 하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기간방송인 KBS도 함께 시범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의 정당성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경우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제1항에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책임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을 보면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봤을 때 다채널방송은 누구나 시청 가능한 실시간 방송환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핵심적인 공익가치 구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범서비스로 명칭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 정도 수용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KBS의 MMS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조기에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첨부자료에 나와 있는 해외자료를 보시면 미국은 이미 '98년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다채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결정했고, 2007년부터는 공영방송인 PBS 주도로 지역별로 공영방송사들이 다채널방송을 24시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채널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 BBC를 보더라도 현재 무료로 40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추진일정을 보면 향후 계획 2015년 1월에 EBS 시범서비스를 허가하고, '15년 하반기에 본방송 도입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것은 첫 번째, 스케줄상으로 보면 아주 늦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두 번째,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의 위상이나 역할을 봤을 때 KBS의 MMS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더 조기에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특히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검토 그리고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BS의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KBS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갖춰져 있는데 더군다나 EBS의 송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장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송사업자들은 얼마나 불만이겠습니까? 그것을 정책당국으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MPEG-2, MPEG-4를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EBS는 MPEG-2로 하겠다고 하고,

KBS는 MPEG-4를 하겠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것처럼 이유를 댔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아시다시피 KBS 콘텐츠와 EBS 콘텐츠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MPEG-2로 했을 때에는 지금 KBS에서 구현하고 있는 1080i 수준의 Full HD 화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KBS는 MPEG-4로 해서 2개의 HD채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좀 더 고도화된 MMS를 KBS는 하려고 할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KBS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방송시장 구조나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갖췄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 해 준다는 것은 정책당국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방송사업자에게도 많은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KBS의 MMS를 확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EBS에 해 줄 경우에 전파법상 방송국 변경허가를 해야 합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어떤 내용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1개 채널을 2개 채널로 가기 때문에 주파수 부분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EBS에게 MMS를 허가해서 여기에 쓰인 목적, 취지를 실현하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KBS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지상파도 있지만 앞서서 해 주는 데 크게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 새로운 채널, 방송국이 하나 더 생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방송시장 구조에 변화가 오고 또 광고시장에 압박이 가해지고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할 조건이 되면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MPEG-2로 방송을 하면 거의 모든 수상기에서 시청을 할 수 있는데 MPEG-4로 방송하면 스마트TV에서만 구현이 가능합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스마트TV와 3D TV에서만 구현이 가능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입해서 장착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문제가 있고, MPEG-2로 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이 가능합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대부분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TV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 그대로 시범서비스를 해 보는데 처음 MMS를 시작했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이 MMS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EBS의 경우에는 교육 내용 때문에 직접수신하는 가구뿐만 아니고 아마도 유료방송에서 이 MMS가 서비스 되면 그것도 같이 전송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KBS 부분은, KBS에서 제출한 콘텐츠 구성 등을 보면 재난 또는 공공적인 내용들이어서 어느 정도 시청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콘텐츠 확보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주파수를 나누어서 다채널방송을 한 것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KBS의 경우에는 EBS와 마찬가지로 광고 없이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이고, 현재 KBS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광고 없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아지는 콘텐츠가 비록 광고 없이 되는 방송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KBS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콘텐츠 확보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시범서비스 부분에 관해서 다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KBS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는 좀 전에 제안 드렸듯이 향후 계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KBS의 MMS 시범 서비스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 1월에 EBS 시범서비스 허가를 하고 하반기에 본방송 도입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신기술도 아닌데 지연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주요 국가들은 벌써 10년 전 MMS에 대한 정책방안을 결정하고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년 하반기에 본방송 도입 로드맵을 마련한다, 최소한 그 전에

KBS의 시범서비스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월 EBS 시범서비스 허가, 하반기 본방송 도입 로드맵 마련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지 KBS의 MMS 시범서비스 실시라도 저희들이 입장을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MMS를 도입해서 방송했을 때 가시청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케이블이나 위성, IPTV를 통해 보고 있는 분들이 지상파로 방송되는 MMS를 수신할 수 있습니까? 채널 2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재송신을 통해서도 법적으로 KBS 1개 채널, EBS 1개 채널만 의무송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간 협약에 따라서는 EBS의 경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콘텐츠가 괜찮으면 MMS를 재송신하는 유료방송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만일에 콘텐츠가 인기가 없다면 재송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접수신가구,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은 10% 미만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시청권, 실제로 시청자가 원해서 실내 혹은 실외 안테나를 세운다면 수도권에서는 90% 이상 가능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직접 수신하는 가정에 있는 TV는 다 MMS 수신이 가능한 TV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MPEG-2로 할 경우에 현재는 가능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케이블 등을 통해 수신하는 분들도 방송사에서 보내주기만 하면 수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유료방송사에서 재송신해 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재송신해 줄 경우 가능해진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가정에서는 안테나를 세우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망에 단자를 물려야 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리고 지금 KBS의 MMS 도입, 당연히 우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EBS를 먼저 시범서비스하기로 한 것은 아마 2가지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편성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EBS의 교육방송 채널이 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하나밖에 지상파로 방송되지 않고 있고, 누구든지 교육에 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소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전송을 못해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MMS를 처음 도입하면서 서로 문제의 소지가 가장 없는 EBS에서부터 먼저 시험해 보자는 뜻이 담겨있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KBS의 경우에도 우선 광고가 없는 KBS도 도입하게 된다면 당연히 KBS-1부터 해야 하는데, 편성계획에 대해 좀 더 KBS 측과 협의를 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출범할 때 편성이 좀 더 알찬 내용이어야 MMS를 도입하는 그 의미와 취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가 보기에는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어린이방송, 물론 아주 필요한 방송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과연 이 MMS 도입의 값어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KBS측과 함께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방송사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고를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삼석 위원께서는 시기를 좀 더 확정하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이 불과 6개월 상관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KBS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KBS가 준비되면 시범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결국에는 KBS가 일반 시청자들이 다채널방송을 볼 수 있는 유인이 되는 의미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야만 다채널방송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KBS 측과 콘텐츠 내용, 그다음에 MPEG-2, MPEG-4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일정을 정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다채널방송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KBS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아마도 시범서비스 형태로 해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여기에 딱 정하기 보다는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KBS 측과 협의해서 그런 콘텐츠의 내용, 그다음에 전송방식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저희가 다시 논의해서 이 정도면 시청자들이 MMS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시청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시범서비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런 정도로 저희 논의를 정리하고, 오늘 EBS의 시범서비스 도입 건에 대해서는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계속해서 KBS의 MMS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하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든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송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모를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공영방송인 KBS의 MMS 도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입장을 다시 수정해서 말씀 드리면 하반기까지 갈 것이 아니고 최소한 EBS 시범서비스를 하면 1/4분기 정도 지나면 1차적으로 시범서비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건에 적시를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1/4분기 지나고 나서 2/4분기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저희가 KBS의 MMS 실시에 대해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제가 이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합니다. '15년 하반기에 EBS 시범서비스를 통해서 MMS 본방송을 도입하기 위한 아까 말씀 드린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들을 쭉 개정하는 작업을 그때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이전에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고 KBS 시범서비스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삼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EBS의 시범서비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그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KBS의 콘텐츠 확보방안과 기술방안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내년 적절한 시기에 KBS도 같이 시범서비스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방송법과 IPTV법 통합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기를 위함입니다. 추진 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방통위와 미래부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서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12월까지는 각 부서마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연구반을 운영해 왔고, 금년 3월~12월까지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연구반 회의를 12회, 사업자 참여 워크숍, 토론회를 거쳤고, 지난 11월 28일에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입니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동일시장에서 동일서비스로 수용되는 유료방송 관련 규제로 한정해서 논의하고 이외의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상파, SO 등 다수의 방송사업 유형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에 IPTV법을 통합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의 주요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류체계 개선 내용입니다. 방송유형 분류입니다. 현행 방송법상 ‘방송’의 정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즉 IPTV의 개념도 포괄할 수 있으므로 현행 ‘방송’ 정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송유형은 방송법상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과 IPTV법에 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삭제하고 이를 TV/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방송사업 분류입니다.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과 IPTV법상 IPTV콘텐츠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과 IPTV법상 IPTV제공사업자를 통합해서 ‘유료방송사업’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진입규제 부분도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되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비실시간 일반PP는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제한 규제입니다. IPTV법상 종편·보도·콘텐츠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제를 방송법상 종편·보도 PP 수준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사용채널’은 ‘공지채널’로 한정하여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현재 IPTV법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료방송의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승인제를 유지하되, VOD 등 부가서비스는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규제의 형평성 제고 측면입니다. 유료방송사업자, 즉 SO, 위성, IPTV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간 겸영제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합산규제 방식으로는 점유율제한을 대통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점유율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등록된 PP의 채널간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변경등록’을 허용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정경쟁 관련사항입니다. 방송법과 IPTV법상 금지행위 대상과 유형을 일원화하고, 적용대상을 IPTV콘텐츠사업자를 포함하여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의무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분리에 대해서는 지금 IPTV 제공사업자에게만 부과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허가·승인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송법에 허가·승인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할 수 있는 방송법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부심사기준과 배점을 고시로 규정코자 합

니다. 방송평가에 있어서는 대상에 IPTV사업자를 포함시켜서 규정코자 합니다. 그 외에 IPTV사업자에게 공익채널 의무를 추가하고 IPTV 허가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됐는데 이 내용을 통합법에도 반영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률개정안을 확정지은 후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 규제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송법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신문 보도나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마치 이것을 통합방송법 제정안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이지, 지금 저희가 IPTV를 포함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과 제정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 직접사용채널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사용채널 운영을 보면 “현행 방송법상 성격과 운영범위가 모호한 ‘직접사용채널’을 ‘공지채널’로 한정하여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허용함,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 제작·편성·송신 기능 가능, 보도·논평·광고에 관한 사항 금지”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케이블은 어떻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케이블은 직접사용채널, 현재는 대부분 공지채널로 쓰는 데가 더 많고 MSO나 개별 SO별로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앞으로 지역정보 제공은 어떻게 됩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그것은 직접사용채널이 아니고 지역채널입니다. SO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지역채널입니다. 지역채널에서 일부 보도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원래 법에서는 지역채널은 보도·논평이 아니고 지역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분명히 할 것은 직접사용채널을 공지채널로 명확히 한다는 것이고, 지역채널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일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 후 ‘국회 법안 제출’이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정확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가 위원회와 미래부 공동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하고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 2월 정도까지 해서 법안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 과정에 물론 미래부와 협의하고 그때 논의의 대상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시 위원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입법예고를 거쳐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역시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 보면 추진 배경의 두 번째를 보면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큼” 이것이 법 개정 추진
배경이지 않습니까? 뒤에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입니다. 물론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면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
지만 내용적으로 말 그대로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공정경
쟁을 해서 그 결과로 시청자 권익 증진이 아니고 조항 자체로 해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
고 증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직접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방송법에 시청자권익보호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 권익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 공동 주체한
통합방송법제 시민사회법안 공청회를 갔다 왔습니다. 대안 성격이라고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 안에 대해서는 통합방송법제가 아니고 통합 유료방송법제라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시청자보호, 이용자보호와 같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항들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종편에 대한 정책을 비롯해서
현재 우리 방송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 개정까지는 이
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
면 방송과 관련된 모든 영역, 즉 산업성뿐만 아니라 공적책임이나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
지, 이런 영역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통
합방송법 제정의 목적과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법안 개정
과정에서 시민단체, 학계, 사업자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운영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지적사항도 저희
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논의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기본방향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방송법·IPTV법 전체를 통합한 법령
개정이 아니고 유료방송 규제체계에 대한 부분만 한정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를 포함한 통합법으로 하는 접근방법과, 저희가 생각할 때 단계
적으로 해서 일단 유사한 시장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제체계
를 보다 더 효율성 높이는 측면에서 하는 방식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지만 저희 생각은
우선 유료방송 규제체계에 대한 것을 먼저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때그때 논의가 되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주에 IPTV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12월 9일….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한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현행법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거기에서 IPTV 허가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방송법에 포함시키면 그 유효기간을 그대로 가져갑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현재 방송법에도 법상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상 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7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수준에 맞추면 괜찮은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법체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까지 보면 IPTV는 방송통신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방송과 따로 분류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도 아니고 통신도 아니어서 따로 만들었는데 제대로 방송의 위상으로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법으로 통합시켜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먼저 방송사업자에 따라 신고와 등록 제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4페이지를 보면

비실시간 PP는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PP는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IPTV법상 비실시간 CP는 신고를 하고 실시간 CP는 등록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이쪽으로 원용해서 정의한 것 같은데 기존 방송법에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방송법에서는 실시간·비실시간 개념이 없어서 VOD사업자는 등록으로 한 사업자도 있고, 또 일부는 등록 없이 위성방송이 직접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것을 통합하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 등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신고와 등록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고로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관리가 됩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신고도 관리는 합니다. 다만, 등록은 신고보다는 심사를 좀 더 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지를 실질 심사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신고는 형식 중심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앞으로 FTA가 체결이 되면서 우리 방송시장도 굉장히 넓어지고 시장 개방 폭이 커질 텐데 우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신고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페이지에 소유 제한과 관련해서 기존 방송법 체계대로 가지고 오니까 다른 것보다는 IPTV법 제한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기존에 있는 IPTV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면 IPTV 사업자들 중에 이 조항에 저촉되어서 지분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현재는 없습니다. IPTV 플랫폼에 들어가는 종편이나 보도PP가 없습니다. 방송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실적용 가능한 사업자는 없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보고하신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에 관한 방송법은 이미 큰 틀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것이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문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인 상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 과정에서 미리 사전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추진 경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12월까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초안을 마련해서 1차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1월 16일 수정안을 마련해서 시민단체와 의견 조율이 있었고, 금년 3월~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시민단체·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입니다. 먼저 시민단체 의견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등을 사후거절 방식으로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자들의 의견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등의 수집·이용 시 사후거절 방식 적용은 빅데이터 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식별성이 없어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를 달리 취급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이므로 관련 법령상의 고지 및 동의 등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내부 조치 사항을 보면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등을 비식별화하여 개인식별성 제거 후 수집·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비식별화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조합·분석하여 생성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집 시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저장·조합·분석 및 제3자 제공 등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 출처 및 정보 활용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과정 및 생성정보에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이용·분석 등 처리 금지입니다.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이용·저장·조합·분석 등 처리를 금지토록 하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의 수집·이용·저장·조합·분석 등 처리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집된 정보의 저장·관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즉,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해외사례를 보면 먼저 EU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재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로 조치하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해 개인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으나 기관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데이터 비식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여 이용하고 재식별하지 않을 것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를 강구하여 ‘특정 가능성 저감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 제공 등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시면 사업자 등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내년 1월 중에 하고, 또 필요하면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또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1년 전부터 발의가 준비되었고 의견 수렴과 토론을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보고에서도 나온 것이지만 개인정보주체가 공개한 것과 나중에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동의가 상당한 차이, 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조치를 했다고 해서 개인정보의 주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다양하게 예측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4페이지 <4>항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이용·분석 등 처리 금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히 필요한 것이 없는가를 들여다보고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를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상당한 경비 부담을 각오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노력과 절차를 감수하고 그럴 만한 의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된 뒤에 별 부작용이 없으면 넓혀가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잘못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후퇴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검증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그래도 1년 동안 많은 의견수렴이 있었고 상당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해외 경험도 반영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서 빅데이터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현재 상태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하면서,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보완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하고 또 조정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8월에 마련된 초안에 비하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가 강화되었고,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시 사전동의제(opt-in) 원칙을 적용하는 등 많은 개선이 된 안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급·활용 등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국이다, ICT 최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에 있었던 금융사들의 대량 개인정보유출, 그다음에 이 동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 이런 사고를 보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만큼은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호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안 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없는 ICT 생태계 구축,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소개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장치들은 대단히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8월에 마련했던 안에 비하면 지금 마련한 안이 실은 외국사례에 근접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ICT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도 그 출발점은 철저한 개인정보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리면 저도 최근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저의 이용정보들을 활용하겠다는 사전 동의 공지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않으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동의해 달라는 것인지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실 때 사전동의를 받는 공지문에, 내용을 보다 더 쉽게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사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 또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과의 서로 양면성이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산업의 발전에 따라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현황을 면밀히 살펴서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나 또 입법으로 추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항상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여러분들 얼굴을 뵈고 하는 대면회의로서는 마지막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오늘까지 47회의 회의를 하였

습니다. 대면회의를 32회 하였고, 서면회의를 15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12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 그리고 실·국·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였고, 또 저희들 논의과정을 방청석에서 지켜보시느라고 기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좋은 훌륭한 안건들이 의결되고 보고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10분 폐회 】